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하남시장(자원순환과)

제출일 : 2022. 6.

1.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간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간 변경 (안 제12조제7항)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규정 (안 제12조의2제1항)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규정 지정 (안 제12조의2제2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소병찬)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간을 현재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여 대행업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조항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용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